

(후원회)·(지정권자)의 잔여재산 인계·인수서

1. 인계자

직 위	성 명	생년월일	주 소	전화번호

2. 인수자

정당·후원회·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명칭	직 위	성 명	생년월일	주 소	전화번호

3. 인계·인수사항

재 산 목 록	인계·인수방법

「정치자금법」 제21조(제1항)·(제2항) 및 「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」 제24조제1항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위와 같이 인계·인수합니다.

년 월 일

인계자

인수자

○○후원회대표자 또는 지정권자

○○당회계책임자

○○후원회회계책임자

○○(공익법인)대표자

○○(사회복지시설)대표자

○○○ [인]

○○○ (인)

○○○ (인)

○○○ [인]

○○○ [인]

주

1. 인계·인수서는 2부를 작성하여 인계·인수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합니다.

2. 잔여재산 중 금전은 수표나 예금계좌 입금 그 밖의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인계·인수를 하여야 합니다.

3. “인계·인수사항”란은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.